

성원고등학교 대입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

제 1 조 (목적) 대학의 학교장 추천 선발 전형 시행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 규정을 마련하여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 2 조 (위원회 구성) 추천의 공정성, 신뢰성,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.)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-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.
- ② 위원은 교무부장, 3학년부장, 3학년 학급담임교사로 한다.
- ③ 본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3학년부장이 맡는다.
- ④ 본 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를 추천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·선정한다.
- ⑤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의 재·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재개정한다.
- ⑥ 추천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1인당 2회에 한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2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타 대학에 재 추천을 원하는 경우 희망자가 없으면 재 추천 받을 수 있다.

제 3 조 (추천 절차) ① 대상자는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다.

- ② 학급담임교사는 추천 대상 학생에 관한 일체의 점수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추천 대상 학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추천대상자로 결정한다.
- ④ 학교장은 필요시 최종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추천 대상 학생을 면접할 수 있으며,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추천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 및 해당 추천 대상 인원 이하일 경우는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,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제 4 조 (추천 기준) ①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 기준이 특별한 기능이나 자질을 소유한 학생에 국한

할 경우 해당 대학의 선정 기준에 의거 3학년부에서 추천 예비 순위를 작성하고,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.

③ 해당 대학에서 수능 등급의 제한을 둘 경우(수능최저등급 적용), 당해 연도에 실시한 대외모의고사(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수능모의평가와 교육청 주관 전국 연합학력평가 등) 성취도 결과가 좋은 자를 우선 추천할 수 있다.

④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선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아래의 본교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.

1) 본교 선정 기준

가) 영역별 추천 성적 산출 비율

구 분	교과영역 (90%)	비교과 영역(10%)	계	비 고
	교과 성적	출결사항		
반 영 점 수	90점	10점	100점	영역별 추천 성적 산출은 전학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.

나) 교과 영역 성적 산출 방법

각 대학의 내신 성적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.

(1) 교과영역 점수 :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.

$\frac{\text{대학별 개인 산출점수}}{\text{대학별 총점}} \times 100 \times 0.9$ (소숫점 4번째자리 절삭)

다) 출결사항 성적 산출 방법

(1) 전 학년 출결상황을 합산하여 결석 일수를 산출한다(사고로 인한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만 해당함)

(2) 사고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의 경우,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.

결석일수	0~2일	3~4일	5~6일	7~8일	9~10일	11일 이상	비고
환산점수	10	9	8	7	6	0	

제 5 조 (기타 사항) ①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.